

-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- 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전라북도 선도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인 조직문화 구축 및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선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18. 10. 01.

(사)캠틱종합기술원 원장

1 사업개요

- 주 최 : 전라북도
- 주 관 : (재)전북테크노파크
- 시 행 : (사)캠틱종합기술원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선도기업(글로벌기업 포함)으로 지정된 기업
- 지원목표 : 총 12개사 내외
- 지원횟수 : 기업당 1회/연
 - ※ 선도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전년도 수혜기업 지원 제외
- 지원규모 : 2천만원 내외/업체당(VAT 제외)
 - 총 소요비용의 75% 이내 지원(총 소요비용의 25%이상 기업 현금매칭)
 - 세부지원내용별 지원규모 상이

□ 지원방식

- 성과지향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실용적이고 최적화된 업무플랫폼 구축 및 실행중심의 실현가능한 결과물 도출 지원
- 기업수요에 반영하여 인력관리,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
- 성과보고회 개최 시, 미 참여 선도기업 홍보로 지원사업 성과 공유

2 지원분야

구 분	세부내용	지원금
월드클래스 300 지원 컨설팅	◦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인 월드클래스 300 선정 지원 컨설팅	20,000천원 이내
SMART FACTORY 구축 지원 컨설팅	◦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- 스마트공정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제조업 스마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·평가하여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을 제시 - 업체 니즈를 반영한 스마트 공정라인 설계 등 ※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의 ‘스마트 공정라인 구축 지원사업’ 과 연계 추진	15,000천원 이내
수출전략 수립 컨설팅	◦수출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 - 특허기술 해외상품화 지원 컨설팅 - 기업 전반적인 비즈니스 현황 분석 및 핵심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 전략 수립	15,000천원 이내
고급기술자 활용 R&D/ 신규아이템 발굴 컨설팅	◦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퇴직 고급기술자 활용 R&D 및 신규 아이템 발굴 컨설팅 ◦도내 대학 석박사 연계 R&D 발굴 기획 컨설팅 ◦특허기술 상품화를 위한 IP/R&D 전략 수립 컨설팅	8,000천원 이내
Best HRD 인증지원 컨설팅	◦Best HRD 인증을 위한 HR 전략, 제도 개선 및 인증 지원 컨설팅	15,000천원 이내

3

수행절차

단 계	수행 방법	비 고
사업공고	○ 지원내용 및 범위 공고 - 홈페이지(www.jblc.or.kr, www.camtic.or.kr, edu.camtic.or.kr)	캠틱종합기술원
↓		
기업신청·접수	○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양식1) - 현장방문/ 메일 접수 (공고일 ~ 2018.10.17.) - 방문접수가 아닐 경우, 접수 확인 필수	신청기업 /캠틱종합기술원
↓		
컨설팅사 신청·접수	○ 컨설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양식2) - 현장방문/ 메일 접수 (공고일 ~ 2018.10.17.) - 방문접수가 아닐 경우, 접수 확인 필수	신청컨설팅기관 /캠틱종합기술원
↓		
기업 상담	○ 기업 대상 컨설팅 기관 설명방문 (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) ○ 사업담당자 신청기업방문 및 수요내용 상담	캠틱종합기술원 /컨설팅기관
↓		
컨설팅기관 매칭	○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 매칭 ○ 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(양식3) (공고일 ~ 2018.11.02.)	신청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평가/선정	○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개최/선정(2018.11.09.) - 신청기업 총괄 책임자, 컨설팅 PM 참석 필수(대면평가) ○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	캠틱종합기술원
↓		
협약추진 및 업체부담금 입금	○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 접수 (양식3) ○ 업체부담금 입금(총 비용의 25%, 신청기업 → 컨설팅기관) ○ 캠틱종합기술원-신청기업-컨설팅기관 협약 체결	캠틱종합기술원 /선정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컨설팅 수행 /중간점검	○ 수정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의거한 컨설팅 착수 ○ 컨설팅 수행내역 보고(수행일지 등) ○ 컨설팅 수행 중 컨설팅 진도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실시	캠틱종합기술원 /선정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컨설팅 종료 /결과보고	○ 컨설팅 종료 ○ 결과보고서 제출(양식7)	선정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성과발표회 개최	○ 캠틱종합기술원, 신청기업, 컨설팅 기관 참여 - 신청기업 총괄 책임자, 컨설팅 PM 참석 필수 ○ 우수 성과 기업 평가 및 선정	캠틱종합기술원 /선정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컨설팅비용 지급	○ 컨설팅비용(총 비용의 75%)지급(신청기업 → 컨설팅기관)	선정기업 /컨설팅기관
↓		
지원금 지급	○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(캠틱종합기술원 → 신청기업)	캠틱종합기술원

※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음영 부분은 기업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임.

4 사업공고 및 접수

□ 신청 및 제출 기간

- 컨설팅 지원신청서 : 공고일 ~ 2018년 10월 17일
- 컨설팅 수행계획서 : 공고일 ~ 2018년 11월 02일

□ 제출서류

- 컨설팅 지원신청서(양식1)
 - 수행계획서(양식3)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담당자의 기업 방문 상담 이후 작성 및 제출
 - 업체 선정 이후 필요서류 추가 제출

신청서류 다운로드 : <http://www.jblc.or.kr>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고

□ 제출방법 : 방문 접수/ 메일 접수

- 제출처 : (사)캠틱종합기술원 산학연협력사업단 지역산업육성팀 윤석갑 대리
Tel. 063-219-0405 / Fax. 063-219-0404 / E-mail. sgyoon@camtic.or.kr

5 평가항목

□ 선정기준 : 최고경영자 개선의지, 컨설팅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, 기대효과 등

- 5개월 이내 완료 가능한 과제
- 컨설턴트 1인당 1건 이상 수행 제한(평가/심사에서 필요성 인정 시 예외)

항목	평가지표	배점
신청기업 추진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자(총괄책임자)의 컨설팅 추진의지 ○ 개선활동 및 혁신활동 현황(최근 3년간) ○ 신청기업 컨설팅 필요성과 명확성 	25
수행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문제점 및 환경분석 등의 도출 적정성과 정확성 ○ 컨설팅 추진 전략의 적정성 ○ 컨설팅 수행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정성 	30
컨설팅 기관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컨설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정성 ○ 컨설팅 기관의 과업수행 실적(최근3년) ○ 컨설팅 기관의 부채비율/유동비율(최근 3년) 	25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○ 컨설팅 내재화 방안의 적정성 	20
합 계		100

6

선정제외 대상

- 지자체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(규격)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
 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7

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-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(사업종료 후 30일)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